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893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7일  
도시안전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5월 27일, 김 경 의원 외 11명  
나.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  
다. 상정일자 :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
(2024년 6월 27일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 경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
○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- 나. 주요골자

(1)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추가함.

### 3. 검토보고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상근)

-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현행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 포함사항에 “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하려는 것임.

[표]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 1. ~ 6.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  7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 <u>7. 구청장이 관리 · 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</u>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- 먼저, “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”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 제2조제3호<sup>1)</sup>에 따라 서울시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“관리감독기관의 장”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·감독하는 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.  
가. 교육장: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
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: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

의 경우 각 구청장이 관내 학교, 유치원,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한 모든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며, ‘24.3월말 기준 9,388개소임([표] 참조).

[표] 어린이놀이시설 현황('24.3.27. 기준)

(단위 : 개소)

합계 ('24.3.27.기준)	주택단지	도시공원	어린이집	놀이제공영업소	아동복지시설
	6,331	1,695	976	137	48
	식품접객업소	종교시설	주상복합	하천	육아종합지원센터
9,388	37	48	47	18	17
	대규모점포	목욕장업소	의료기관	박물관	공공도서관
	11	7	7	6	3

(출처: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(cpf))

- 한편,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)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3조에 따르면 2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‘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’, 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’, ‘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·오염도 검사’, ‘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’, ‘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’, ‘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대책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.
- 동 개정안은 이 같은 관리계획의 포함사항에 ‘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
- 상위법상 원칙적으로 각 구청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합동점검계획과 업무담당자 교육이수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취지로 이해되며,
- 시와 구의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구청 업무담당자의 교육이수상태를 시가 관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조치라 여겨짐.
- 참고로, 시는 이미 관리계획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조례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.

**□ 2023년 어린이놀이시설 시·구 합동 점검결과**

- 점검기간 : (상반기) '23.4.3.~5.26. / (하반기) '23.9.20.~11.8.
- 점검대상 : 1,500개소(상반기 775개소, 하반기 725개소)
- 점검결과 : 지적사항 742건(상반기 419건, 하반기 323건)

(단위 : 건)

구 분	상반기		하반기	
	시설물 상태 이상	의무사항 미준수	시설물 상태 이상	의무사항 미준수
합 계	350	69	278	45
주택단지	229	53	183	38
도시공원	83	0	64	1
어린이집	28	5	21	1
기타시설	10	11	10	5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해당 없음**

- 5. 토론요지 : 없 음**
- 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해당 없음**
- 7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**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**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 없음**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9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4년 05월 27일  
발의자: 김경, 김규남, 김기덕,  
김영철, 김지향, 박승진,  
박칠성, 서준오, 왕정순,  
이원형, 임만균, 한신  
의원(1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 추가 함.

## 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- 기타 : 신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③ · ④ (생 략)</p>	<p>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구청장이 관리·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(현행 제7호와 같음)</p> <p>③ ·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(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합동점검계획 및 업무담당자 교육이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여지<sup>1)</sup>가 있으나, 확인결과 기시행<sup>2)</sup> 중이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 
담당관 오희선  
추계세제팀장 김중현  
추계분석관 손제승  
☎ 02-2180-7954  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「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」 제3조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)  
④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. 다만,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 
2) 2024~2025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(재난안전예방과-4578, 2024. 3. 27.) p.12~13 등